



## 대 구 지 방 법 원

### 제 1 형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	2013노1982 의료법위반
피 고 인	A
항 소 인	피고인
검 사	정경현(기소), 박순애(공판)
변 호 인	변호사 B
원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. 6. 13. 선고 2013고정230 판결
판 결 선 고	2013. 12. 26.

### 주 문
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이 선고한 형(벌금 300만 원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#### 2. 판단

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한방의 침에도 플라젠시아와 유사한 성



분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 점, 피고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.

그러나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인 리도카인(국소마취제) 약물을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는 등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대상 환자도 많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이 사건 범행의 경위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.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김성수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서범준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권경원 \_\_\_\_\_